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52055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복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6.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20,203,5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3,5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03. 5. 12. D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08. 3. 7., 이자율 연 15.2%, 지연이자율 연 18.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D은 위 대여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2)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975452호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8. 'D은 원고에게 17,815,706원 및 그 중 4,713,307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5. 확정되었다.
- 3)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은 2021. 8. 10. 기준으로 20,203,506원이 남아 있다.

나. D의 재산처분과 무자력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은 2019. 6. 28.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법정상속분 3/9), 자녀인 위 D, C, F(각 법정상속분 2/9)이 있었다.
- 2) 피고 및 D, C, F은 2019. 6. 28.경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8.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 D은 이 사건 분할약정 체결 당시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 지분'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10. 5. 접수 제40084호 압류등기(권리자 국, 처분청 평택세무서)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압류등기는 이 사건

분할약정 이후인 2019. 8. 5.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위 압류가 해제될 당시 체납액은 352,440원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019년에는 m²당 200,200원이고, 2021년에는 217,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성시, 평택세무서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약정으로 인하여 D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D의 재산상태, D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위 채권이 변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이미 설정되어 있던 위 압류등기가 이 사건 분할약정 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D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 2019년 기준 35,279,688원(= 200,200원×793㎡×2/9) 상당이고, 2021년 기준 38,293,088원(= 217,300원×793㎡×2/9) 상당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적어도 위 금액 이상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압류 채납액이 352,4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의 이 사건 상속 지분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채권액 20,203,506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약정은 원고의 채권액 20,203,5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0,203,5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분할약정은 20,203,5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0,203,5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대지 793㎡2. 경기도 안성시

위 지상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독주택

동

76.45㎡

부속건물

조적조 스텔지붕 창고

동 12.25㎡

샌드위치판넬

샌드위치판넬지붕

단독주택

동 69.80㎡

